

은혜사랑의교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교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 장로회(합신)“은혜사랑의교회”라하며 본 교회라 칭한다.

본 교회는 쉼마학교교육선교회 및 숲길(심리상담센터)을 부설기관으로 둔다.

제2조 [위치]

본 교회는 경기도 수원시 망포동 센트럴하이츠 309동 1802호에 둔다.

본 교회는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 163-1번지로 이전하다.

본 교회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127-5 우선센트럴타워 10층 으로 이전하다

본 교회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127-5, 10층(산척동, 우성센트럴타워)에 둔다.

본 교회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127-5, 10층 1-6호(산척동, 우성센트럴타워)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교회의 목적은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고 세계를 선교하는 일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인생의 방향타를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확장에 맞추고 전심전력해야할 시대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실천하며 성령님의 능력으로 증인되어 주님이 온 세상의 주인되심을 선포하고 인정하며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이다.

1.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

사람이 주인 노릇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도록 힘쓰기 위해 직분자의 임기제를 도입한다.

교회 운영을 위한 원칙들을 명기한 교회정관을 제정하여 이에 준하여 교회를 운영한다.

2.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되는 교회

사람이 교회되기 위해 교인들의 내적성숙을 위한 신앙훈련과 교육을 제공한다. 교회 내에서의 목회자와 평신도 계층구분을 극복하고 목회자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지 않도록 목회 리더십과 행정 리더십을 구분하여 균형 있는 교회 운영을 도모한다.

3. 보냄 받은 공동체로서의 교회(요 20:21).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지상명령(마 28:19-20; 행 1:8)과 지상계명(마 22:37-40)을 순종하여 사랑으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한다. 이를 위해 예배당 중심, 목회자 중심, 주일 중심의 신앙생활을 탈피하여 세상에 보냄 받은 자로서 직업소명의식 회복, 일상생활 예배 등을 실천한다. 이를 위해 교회 주중 회집을 최소화한다.

4.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의 말씀, 곧 성경을 기초로 삼는 교회(엡 2:20-22).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말씀의 회복, 말씀으로의 회복에 중점을 둔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인격을 통해, 각자의 일상을 통해 회복되어 가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힘쓰며 회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평화와 고난과 나눔의 영성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회적 공의를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훈육한다.

제2장 교회운영의 원리

제4조 [근거]

본 교회는 신구약 성경을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이를 신자들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으로 삼고, 성부, 성자, 성령의 성삼위 하나님께서 살아서 신자의 삶과 역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는다.

제5조 [신앙노선]

본 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등의 개혁주의 신앙고백을 따른다.

제6조 [교회의 주권]

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교회 운영의 주체는 그 부르심을 입어 본 교회를 구성한 교인들에게 있다.

제7조 [양심의 자유]

하나님만이 양심을 주재하시며 그가 신자들에게 신앙 양심의 자유를 주사, 신자들은 신앙에 관계된 모든 사건에 대해 속박을 받지 않는다. 모든 신자들은 각자의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고, 아무도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8조 [복음적 분업]

모든 교인은 다 그리스도의 사역자이며 그의 부르심에 따라 각기 하나님의 나라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게 한다. 그러므로 모든 사역자의 지위는 동등하며 서로의 맡은 바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

제3장 교인의 자격과 의무

제9조 [교인의 자격(정회원/준회원)]

1. 본 교회의 정관에 동의하고 교회에 등록하고 새가족 모임을 마친자에 한하여 준회원이 되며 모든 집회에 참석할 수 있다.
2. 교회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새가족반 수료를 마친 후 최소 1년이상 소그룹에 참여하여야 하며 순장에 추천에 의하여 목회협력위원회에서 의논 후 최종 결정한다.
3. 본인의 이적요청이나 공동의회에서의 제적처분, 또는 1년 이상 무단으로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경우 교인의 자격(정회원)을 상실한다.
4. 정회원이라함은 흠 없는 입교인을 말하며 정회원만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10조 [책임과 의무]

1. 교인은 교회가 정한 정기에배와 교육과 모임에 성실히 참여하고 교회의 다스림에 따르며 연보(헌금)와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의무가 있다.
2. 본 교회의 회원은 1개 이상의 위원회 또는 부서에 소속하여 활동해야 한다.

제11조 [권리]

1. 교인은 교회의 주체로서 교회의 모임과 회의에 참여할 수 있고, 각종 회의에서 발언과 의논,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정회원만 교회의 선거에 나갈 권리와 투표를 할 권리가 있다.

제12조 [조직]

1. 담임목사는 본 교회를 대표하며, 본 교회에서 회집되는 모든 회의(공동의회, 당회, 제직회, 목회협력위원회등)의 의장이 된다.
2. 제3조에서 정한 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헌법(교회정치)에서 정한기구(공동의회, 당회, 제직회) 이외에 목회협력위원회등 여러기구를 둘 수 있다.

3. 각종 위원회와 부서의 구성 및 그 역할 범위에 대해서는 목회협력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는 기 준에 따른다. 각 위원회의 지도는 교역자 또는 장로(공석시 목회협력위원회 위원가능) 중에서 당회장이 임명하며, 각 위원회 및 부서의 장은 권사, 안수집사 및 서리집사 중에서 목회협력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당회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장 의결기구

제13조 [공동의회]

1. 회원

공동의회는 본 교회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공동의회시 정회원만이 투표권을 가진다.

2. 회집

정기 공동의회는 목회협력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교회의 재정결산과 예산의 심의 및 채택을 위해 매년 1월에 소집한다.

3. 개회 및 의결정족수

공동의회 개회정족수는 회의 소집 당시 등록된 정회원의 과반수로 하며 의결정족수는 참석회원의 과반수로 한다.

4. 회의

회집된 공동의회의 진행은 헌법(교회정치) 제20장 제1조 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연말 정기 공동의회에서는 목회협력위원회의 경과상황을 들으며
- ② 제직회와 교회 소속 기관의 종합보고와
- ③ 교회의 재정 결산과 예산안을 채용하고
- ④ 그밖에 법대로 제출하는 사건을 의결하며
- ⑤ 목사 청빙 투표에는 투표수 2/3 이상의 가표와 정회원 과반수의 승낙을 요하며
- ⑥ 장로, 집사 및 권사 선거에는 투표수 2/3 이상의 가표로 선정하고
- ⑦ 그 밖의 의결은 투표수의 과반수로 한다.

2. 회원자격의 정지

헌법(교회정치) 제3장 제3조 5항에 규정된 내용 이외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공동의회의 회집에 연속하여 불참한 경우에는 회원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다만 위임장을 사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 [당회]

1. 구성

당회는 의장(당회장)인 담임목사와 시무장로중 운영장로로 구성되며, 모든 장로는 65세에 은퇴한다.

2. 시무장로의 정의

- ① 시무장로는 운영장로와 사역장로로 구성된다.
- ② 운영장로의 임기는 6년이며 마친 후 사역장로가 된다.
- ③ 운영장로의 경우 3년이후 임기 6년 내에 본교회가 분립한 개척교회 또는 개척교회 1년을 의무적으로 섬겨야 한다.

3. 당회의 성수

헌법(교회정치) 제15장 제2조에 따라 당회에 장로 2인이 있으면 목사 1인과 장로 1인의 출석으로 성수가 되고, 장로 3인 이상이 있으면 목사 1인과 장로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수가 된다. 장로 1인만 있는 경우에는 목사와 합하여 당회의 모든 일을 행하되, 그 장로 처리문제나 다른 사건에 있어서 장로가 반대할 때에는 노회에 보고하여 노회로 처리하게 한다.

4. 당회의 직무

당회의 직무는 헌법(교회정치) 제15장 제4조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다.

당회의 직무는 영적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서 본 교회의 교인들의 신앙행위를 사랑으로 보살피고 예배의식과 성례거행에 봉사하며 장로와 집사를 임직하는 일을 하며, 본 교회의 각 기관을 사랑으로 섬기며, 교회의 영적 유익을 위하여 심방하며 권징하는 일에 봉사하며, 교회의 영적 부흥을 장려한다.

5. 당회의 권한

당회는 예배모범에 의지하여 모든 회집시간과 처소를 작정하며 교회의 토지와 가옥등을 관리한다.

6. 당회의 회집

정기 당회는 1년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회집하고 임시당회는 본 교회 목사의 요구 또는 장로 과반수의 요구 또는 제직회원 1/3이상이 요구할 때 회집한다.

제15조 [목회협력위원회(목회협력위원회)]

가. 목회협력위원회의 직무

1. 목회협력위원회는 담임목사, 장로, 교역자, 순장장, 팀장으로 구성되고 합의제 집행기관으로서 교회의 행정과 교회의 목적을 완성할 정책설정 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목회협력위원회 의장은 담임목사로 하고 유고시 교역자중 선임이 맡는다. 단 교회개척시에 담임목사가 한시적으로 목회협력위원회를 합의하에 구성할수 있다. 목회협력위원회는 당회역할을 대체한다.

- ①목회협력위원회는 영적인 분야의 일에 대하여는 담임목사의 특별한 지도를 받는다.
- ②목회협력위원회는 교인들의 필요와 요망사항 등에 항상 귀 기울여야 한다.

2.목회협력위원회는 교회의 재산 관리의 책임을 맡는다.

- ①목회협력위원회는 공동의회의 승인 없이 부동산의 구입 매각 저당 양도 등을 하지 못한다

3.목회협력위원회는 교회의 문서 자료 등을 보관할 책임이 있다.

4.목회협력위원회는 예산편성과 집행을 할 필요가 있다.

- ①목회협력위원회는 1년의 예산을 편성하여 연초 정기 공동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목회협력위원회는 교회의 심각한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 교인들에게 알려야 한다.
- ③모든 재정 지출은 목회협력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목회협력위원회는 필요시 목회 보조역이나 평신도 전문자를 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6.목회협력위원회는 월 1회 정기 모임을 가질수 있으며, 필요시 위원의 1/3 이상의 동의로 소집할 수 있다

7.목회협력위원회는 회계년도 말에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나. 회계 및 부회계의 직무

1.회계는 목회협력위원회의 집사 중 1인을 선임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회계의 선출은 선출 당시 목회협력위원회의 직분을 맡고 있는 자 중에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회계의 임무는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고, 재정기록을 보관하고, 재정상태를 보고해야 한다.

3.회계는 정기목회협력위원회가 소집될 시 매월 회계보고를 해야 하며, 공동의회에서 회계 보고를 해야 한다.

4.부회계는 회계와 동일한 방식으로 선출하며,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 서기의 직무

1. 서기는 목회협력위원회의 집사 중 1인을 선임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서기의 선출은 선출 당시 목회협력위원회의 직분을 맡고 있는 자 중에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서기의 임무는 공동의회와 목회협력위원회와 기타 모든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교회의 모든 문서를 관리 보관한다.
3. 서기는 교적부를 작성하고, 교회의 출석 인원을 점검하고 기타 현황을 유지한다.

제16조 [보조기관]

1. 본 교회는 교회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타 보조기관(예, 주일학교 등)을 둘 수 있다.
2. 보조기관의 발족은 목회협력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가능하다.

제17조 [팀]

1. 각 팀은 본 교회 행정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기본 단위로서 그 운영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된다. 각 팀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예배팀 : 예배 및 성례, 예배 장소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을 담당한다.
 - 사역팀 : 국내외 전도, 교회 대내외 봉사, 주일 중식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재정팀 : 교회 재정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을 담당한다.
2. 집사들은 1개 이상의 팀에서 봉사합니다.
3. 각 팀에는 팀장을 두며, 필요에 따라 총무, 서기 등의 임원을 둘 수 있다.
단 팀장은 집사 이상 교인이 맡을 수 있다.
4. 팀 운영 원칙은 다음과 같다.
 - ① 각 팀이 공동의회에서 승인을 얻은 업무는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 ② 팀과 목회협력위원회의 조정이 필요한 업무는 목회협력위원회의 간여 및 지도를 따른다.
5. 각 팀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소관업무의 일부를 다른 부서에 위임하거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6. 교회는 필요에 따라 목회협력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팀을 새로 설치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및 회계원칙

제18조 [재정원칙]

1. 교회 재정 지출의 20%를 구제 및 사회선교 교육사업 등 외부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 1) 절기헌금중 부활절, 추수감사절 헌금은 50%를 구제와 선교등 특별한목적에 사용하도록 하며 선정은 목회협력위원회에서 동의를 얻어 당회장이 결정하도록 한다.
 - 2) 창립감사헌금은 개척을 위한 비전헌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한다.
2. 재정의 사용은 항상 투명해야 하며 결산은 내부 감사와 외부 감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차입경영은 하지 않는다.
4. 헌금(연보)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적 성숙과 헌신됨의 표현이고, 우리 소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에 대한 신앙의 표현이다.

제19조 [재산의 관리]

1. (구분) 본 교회가 소유한 재산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기본재산 : 교회 부지, 소유 토지, 교회당, 교육관, 사택 등의 부동산
 - 2) 보통재산 : 본 교회의 각종 시설, 교인들의 헌금과 특별기부로 조성되어 예치되어 있는 현금과 각종 소모성 시설 및 비품 등 기본재산에 속하지 않은 소모성 재산
2. (재산의 관리) 교회 재산 중 기본재산 중 모든 부동산은 교회 명의로 등기하도록 하되 행정상의 편의 혹은 법적 요건에 따라 당회장이 주체가 될수 있으며 당회가 관리하고, 보통재산은 제직회 관리부가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보존, 관리하며, 예치된 현금도 당회의 지도, 감독 하에 제직회 재정부가 장부를 작성, 비치하여 관리한다.
3. (기본재산의 처리) 기본재산을 취득, 매도, 증여, 교환하거나 중요한 용도 변경의 경우에

는 당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를 한다.

4. (이탈교인의 재산권) 교회의 재산은 교인에게 지분권이 없으므로, 교인이 교회를 이탈할 때에는 교회 기본재산의 처리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5. (각종 시설물 사용) 교회의 각 비품 및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 사용케 한다.
 - 1) 각종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하여서는 1주일 전에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팀장과 관리부장을 경유하여 담임목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사용승인 된 시설물은 교회에 공지되지 아니한 목적의 일로 사용할 수 없다.
 - 3) 교회의 비품대출 및 반납은 관리간사의 입회하에 확인되어야 한다.
6. 교회의 기본재산을 처분할 경우에 특정 개인에게 이익이 돌아가서는 안 되며, 재산을 처분한 결과는 교회 공동체 또는 사회 전체의 공공의 이익이 되도록 한다.

제20조 [재정 장부 열람 및 보관]

1. 재정담당자는 공식적으로 공개하도록 요구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비공식적인 사석에서 함부로 발설하여서는 안된다.
2. 정기공동의회에서 결산안이 승인된 이후에 개인이 열람할 경우 개인의 청원과 목회협력 위원회를 거쳐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일반 의결정족수에 따라 재정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3. 재정관련 자료는 3년을 보관하며 이후 폐기하도록 한다.

제21조 [교역자의 보수]

1. 보수는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며, 보수는 연봉과 그 밖의 제 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2. 교역자인 담임목사와 부교역자(부목사, 강도사, 전도사)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신수비 또는 사례비’라 칭하며, 처음 청빙할 때 제시된 조건을 따른다.
3. 교역자와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사례 및 보수의 총액은 공동의회의 최종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4. 교회는 교직원들에게 책정된 보수이외에 ‘교직원복지비지급기준’ 등에 의하여 자녀교육비, 격려금, 복리후생과 관련한 비용 등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5. 본 교회는 매 결산시 1년 이상 계속하여 시무하거나 근무한 교역자와 직원에 대하여 법

정퇴직금액을 산정하여 퇴직연금에 불입하거나 또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교회를 개척하여 시무중인 위임목사의 경우는 교회에 기여한 공로 등을 감안하여 퇴직금 정산시 퇴직금 외에 위로금, 또는 공로금을 목회협력위원회의 결의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교회가 정한 일정액의 퇴직금과 법률이 정한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의 사업자 측부담금을 지급한다.

제22조 [목회(활동)비 및 지출증빙]

1. 목회비는 교회발전과 목회유익에 관련이 있는 위임목사의 대내외 사역 및 교회대표자로서의 사역을 위해 위임목사의 재량으로 사용하는 비용을 말하며(사택지원비.사택관리비.심방비. 차량유지비. 도서비. 통신비.경조사비. 식비. 자녀교육비 및 세미나비, 학비지원, 출장비.접대비. 의료보험비.국민연금.병원치료비등등) 본 교회의 목적과 비전에 따른 목회 및 담임목사 사역수행에 부합되게 사용한다.
2. 목회비는 원칙적으로 다음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 1) 담임목사의 목회연구 및 설교에 필요한 도서·자료의 구입과 기타 교육 및 세미나 참석에 필요한 제비용의 지출
 - 2) 사택관련 및 차량관련, 통신에 필요한 제비용의 지출
 - 3) 담임목사의 의료보험비, 국민연금, 병원치료비등에 관한 제비용의 지출
 - 4) 목회와 선교관련 출장에 관한 제비용의 지출
 - 5)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선교사·목회자·원로목사·미자립교회 교역자, 성도등 대내외지원비와는 지출성격이 구분되는 개인적 목회사역
 - 6) 교회방문 교역자나 대내외 교역자, 성도, 각종 대인관계시 식대선물 등 방법의 접대
 - 7) 목회에 도움을 주신 분들과의 교제활동
 - 8) 교직원복지비에서 지출하지 않은 담임목사의 품위유지를 위한 의복, 기타 물품구입
 - 9) 교직원복지비에서 지출하지 않은 휴양이나 체력단련, 건강관리 등 목회사역에 도움이 되는 제반 활동
 - 10) 기타 애경사 지원 등을 포함, 위임목사 목회활동영역에 부합되는 제반사역
 - 11) 교역자 학비지원 및 각종 세미나 지원
3. 목회비는 사용처에 맞게 영수증(교회자체영수증 포함)으로 처리하며 목회비 중 증빙이 곤란한 특수한 경우의 지출은 그 지급처를 재정위원회 담당자가 별도로 기록 관리한다.
4. 목회비는 목회협력위원회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최종확정하는 예산으로 한다.

제23조 [예결산]

1. 교회는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매년 목회계획에 따른 예산을 재정팀(담임목사 포함)에서 작성하여 목회협력위원회를 거쳐공동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예산은 목회자의 신수비 예산과 목회활동비 예산, 기타 예산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3. 예산은 전년도 예산의 최종결산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목회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의회의 승인을 얻어 이를 수정 또는 결정할 수 있다.
4. 결산은 재정팀이 작성하고 목회협력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감사의 보고서와 함께 공동의회에 넘겨 공동의회에서 확정한다.

제24조 [재정지출]

모든 재정지출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재정팀장이 시행한다.

제25조 [회계 연도 및 회계처리]

1. 본 교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2. 교회의 회계 처리는 단식부기의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회는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신수비(생활비등) 또는 사례비와 그 밖의 교회활동(목회활동비 포함)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구분하여 기장하고 회계 처리를 한다.

제6장 교회 직원

제26조 [교회의 직원]

1. 본 교회의 직원은 목사, 장로, 안수집사로 구성된다.
2. 담임목사 외의 교회 직원 선출을 위해 교회 목회협력위원회가 '임명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절차와 방법 및 인원은 목회협력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7조 [직원의 선출]

가. 담임목사의 청빙

1. 담임목사의 청빙이 필요할 경우, 교회 목회협력위원회는 '목사 청빙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목사 청빙위원회는 목회협력위원회의 부위원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 위원은 교회의 회원이나 목회협력위원회 회원 중에서 6명으로 구성되며, 그 위원의 선출은 목회협력위원회에서 한다.

2. 본 교회의 목사는 한국의 개혁신주의 노선을 따르고, 건전한 복음주의적 교단에서 정식으로

안수받은 자라야 한다.

3. 목사 청빙위원회에서는 가능한 통로를 통해 후보자를 물색, 심의한 후 그 1인을 선정하여 공동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4. 공동의회의 목사 청빙 승인은 참석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고,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5. 담임목사의 청빙서에는 정회원의 과반수의 서명을 받은 청원서, 이력서, 공동의회록을 첨부한다.

나. 교역자

1. 교회 헌법에 따라 담임목사는 교회가 청빙하며 부교역자는 담임목사가 선정하여 운영위원회에 인준을 받는다.

2. 부교역자(부목사, 강도사, 전도사)의 시무기간은 1년이며 연초에 다시 임명을 받을 경우 연임할 수 있다.

3. 부교역자의 경우 개혁주의와 복음주의 계통의 타교단에서도 선정할 수 있다.

다. 교회직원

1.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총회헌법에 따라 산출하되 집사중에서 선출하며 먼저 운영위원회가 공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선출한다.

2. 장로는 시무장로로 운영장로와 사역장로로 구분되며 은퇴장로, 협동장로가 있다

① 운영장로의 임기는 3년이며 1년 휴지기간을 갖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최대 6년)

② 운영장로의 임기를 마친후 사역장로가 된다.

3.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은퇴는 70세이다. (단, 장로의 경우 65세인 경우 사역장로가 된다)

4. 타교회의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본 교회로 이명하여 올 경우 호칭은 그대로 부를 수 있으나 공동의회의 투표를 거쳐 본 교회의 직원으로 선출 될 때에만(안수 없이 임직식 혹은 취임식을 거쳐) 교회의 시무장로, 시무안수집사, 시무권사가 되며 세부사항에 따른다.

제28조 [직원의 직무]

가. 목사의 직무

- 1.목사는 교인의 영적인 일을 돌보며 설교를 말할 뿐만 아니라, 심방 성례 집회 목회상담 등의 책임이 있다.
- 2.목사는 목회협력위원회의 장으로서, 목회협력위원회에서 교회의 목적에 상응하는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한다
- 3.목사는 교회의 신앙과 행위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치리를 시행한다.

나. 장로의 직무

- 1.장로는 교회에서 평신도의 대표로 교인들과 목사 사이의 교량역할을 하며, 교회의 평화와 일치, 순수성을 지키도록 노력한다.
- 2.장로는 목사와 함께 교회의 신앙과 행위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치리를 시행한다.
- 3.장로는 목회협력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고, 목사청빙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담임목사 공석시나 목사 시무 재계약을 위한 공동의회의 의장이 된다. 만일 장로가 2인 이상일 경우 선임자, 연장자 순으로 따른다.
- 4.장로는 담임목사의 공백시, 강단을 비우지 않도록 설교자를 주선하며 공동예배시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모든 절차와 준비사항을 점검한다.

다. 집사의 직무

- 1.집사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도우며, 궁핍 중에 있는 자를 구제할 직무가 있다. 교회의 목적 가운데 특별히 봉사하는 일은 집사가 힘써야 할 일 이다.
- 2.집사는 목회협력위원회의 위원이 되어 행정 재정 및 모든 교회의 활동에 관여한다.

제7장 권징

제29조 [권징의 원칙]

교회의 질서와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 권징은 필요하다. 모든 권징은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뜻에 근거해야 한다.

제30조 [권징의 과정]

교인 중에 반성경적 행위로 그리스도의 뜻을 훼손하는 자가 있을 경우 혹은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출석하지 않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장로가 수차 심방하고 이를 권면하거나 출석의사를 타진해야 한다. 본인이 끝내 돌이키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될 때 장로는 이를 기록한 후 기록을 첨부하여 권징안을 목회협력위원회에 넘기고 목회협력위원회와 공동의회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제31조 [권징의 종류]

권징의 종류는 아래 각 호 와 같다.

1. 근신: 교인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일시적 정지.
2. 해직: 임직원의 경우 해당 직위의 해직.
3. 출교: 교인으로서 자격박탈.

제7장 분립

제32조 [교회의 분립 준비]

본 교회는 성인 출석 교인이 000명을 넘을 때부터 교회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회 분립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분립을 준비한다.

제33조 [교회의 분립]

본 교회는 분립준비위원회(장로 1인, 권사 1인 필참) 결성후 교회의 분립을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목회협력위원회를 회의를 거쳐 분립하며 5년마다 개척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장 부칙

제1조 [효력]

이 정관은 공동의회의 결의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시행세칙]

이 정관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사항은 따로 시행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3조 [개정]

이 정관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목회협력위원회 재적 과반수 이상이나 정회원 1/30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발의된 개정안은 목회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동의회에서 재적 3분의 2이상 출석,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확정하며 차후 목회협력위원회에서 1차레 더 논의한다.



2016년 11월 5일 제정 공포

2017년 12월 17일 목회협력위원회 결의

2018년 1월 7일 공동의회 결의

2019년 5월 22일 공동의회 결의

2022년 1월 8일 공동의회 결의

(정관제정위원 정성록 고선영 김영진 김형석 김흥분 사인생략)